

의안
번호

제2351호~제2364호

2023. 3. 31.(금) 11: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4건(조례안 12, 동의안 2)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51호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2호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3호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4호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5호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6호 :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7호 :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8호 :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59호 :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60호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의안번호 제2361호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62호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63호 :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64호 :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351호	2023. 3. 9.	최미화 의원	2023. 3. 20.	2022. 3. 27.
제2352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2. 3. 20.	2022. 3. 27.
제2353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2. 3. 20.	2022. 3. 27.
제2354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55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56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57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58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59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60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61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62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63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제2364호	2023. 3. 16.	장성군수	2023. 3. 20.	2023. 3. 27.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안함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가결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9.
- 제출자 : 최미화 의원(보건소 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첫째아 1,200천원 → 4,000천원
- 둘째아 2,500천원 → 6,000천원
- 셋째아 4,200천원 → 8,000천원
- 넷째아 부터는 10,000천원

- 지급기준

- 첫째아 1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둘째아 2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셋째아 3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넷째아부터 4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설치(안 제20조)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 장성군청소년위원회의 겸임 가능

- 구성 및 임기(안 제21조)

- 15~20명 이내의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
- 위원장 선출 방법
- 임기

- 기능(안 제22조)

-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 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회의(안 제23조)
 - 회의의 소집
 - 개회 및 의결 정족수의 규정
- 준용(안 제24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정의 준용
- 재정 및 실무지원(안 제25조)
 - 수당과 여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 부의 안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안 제14조제4항)
- 위원회 회의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범위 구체적으로 열거(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의 참여자격 개정(안 제2조)

(현행) 법관→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인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증원

○ 주요내용

- 정원의 총 수 조정 : 684명 → 685명(1명 증)

· 집행기관 : (현행) 669명 → (개정) 668명

· 의 회 : (현행) 15명 → (개정) 17명

※ 직종·직급별 정원 증원내역

구분	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당초	684	648	4	1	34	609	1	2	3	30
변경	685	649	4	1	34	610	1	2	3	30
증감	+1	+1	-	-	-	+1	-	-	-	-

* '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정책지원관)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참고조례를 참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규정, 외국인 연령 규정 삭제(제3조, 제9조, 제10조)
 -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 규정 사항이 없기에 삭제, 외국인 연령은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기에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제8조, 제10조)
 -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명부 관련 내용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추가 신설(제8조 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 중복 내용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참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최근 개정(2022. 7. 12.)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민원실이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

- 민원실의 설치 등(안 제4조)

-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음.

-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민원실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함.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안 제6조)

-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대기공간 마련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함
-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 보험가입(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군민

- **보험회사 선정(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

- **보험료 납부(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

- **보장기준(안 제6조)**

-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보험회사와 별도 지정

- **보험금 청구(안 제7조)**

- 피보호자인 장애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 사고일 현재 타시군 전출자, 허위 보험금 청구자,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제한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개정)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통합 및 폐지(안 제3장, 부칙 제2조)

- 상기 조례를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신설 후 공포·시행 시 폐지

- 비용의 보조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4장 제23조~제24조)

-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근거 조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 이전 신축

- 1987년 보건소가 건축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회의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늘어나는 보건 수요에 대처가 어려워 이전 신축하고자 함
- 당초 장성읍 영천리 1487-1 외 5필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지가 상승 기대로 보상 불협의를
- 이에 장성읍 기산리 477-1 외 7필지로 보건소 신축 부지를 이전코자 함.

3.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계		8필지 / 동	9,712	4,204,960	
취득	토지매입	8필지		3,204,960	
	건물신축				
	기 타	하우스 및 포도나무 등		1,000,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변경안은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지를 영천리 1487-1번지의 5필지에서 기산리 477-1번지의 7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안 제2조 (현행)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관련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6호
-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게 과태료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별표)
 - (현행)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군민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확대(안 제1조)

- (현행)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적용
- (개정)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종류 확대

- 접종종류 조항(안 제2조)

-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규정 마련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현행)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적용
- (개정)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7.(제3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하고, 소독형태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방역소독 민간위탁
- 추진필요성
 - 감염 취약지역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사전 예방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감소
- 위탁기간 : 2023. 4월~
 - ※ '23년 시범기간 : 2023. 4. ~ 10.

- 대상지역 : 장성군 전지역(11개 읍면)

※ '23년 시범운영 : 삼계면 전지역

구 분	방역방법	지 역
1권역	연막, 분무	사창1~13리
2권역		월연1~2리, 주산1~2리, 상도1~2리, 능성1~2리
3권역		발산1~2리, 수옥1~2리
4권역		덕산리, 수산1~2리, 죽림리, 생촌1~2리
5권역		부성1~2리, 화산1~2리, 신기리, 내계1~2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하고, 소독형태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365호
----------	--------

2023. 3. 31.(금) 11: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건(제정조례안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65호 :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II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1차 산건위)
제2365호	2023. 3. 16.	장성군수 (일자리경제실장)	2023. 3. 20.	2023. 3. 24.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제3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음식특화거리 지정 등(안 제5조)
 -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 지정요건 충족 확인
 - 음식특화거리 지정절차(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서 교부, 지정내용 공고, 관리대장 작성
 -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안 제8조)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장성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 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366호
----------	--------

2023. 3. 31.(금) 11: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I. 심사대상

-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23. 3. 24.
- 상정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3. 28. ~ 3. 30.)
 - 실·과소장 질의·답변 및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 의결일자 : 2023. 3. 30.(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결

III. 예산안 총괄

- 규모 : 565,298백만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556,163백만원
- 특별회계 : 9,135백만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565,298	527,246	38,052
일반회계	556,163	518,311	37,852
특별회계	9,135	8,935	200

IV.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에서 380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증액 또는 조정되었고, 일부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제위기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분야에 대한 민생안전대책 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함.

VI.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

○ 생 략

VII.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별첨 자료 참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1. 세 입 : 565,298,953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65,298,953	-	-	-	565,298,953
일반회계	556,163,040	-	-	-	556,163,040
특별회계	9,135,913	-	-	-	9,135,913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565,298,953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82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82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65,298,953	820,000	820,000	-	565,298,953
일반회계	556,163,040	820,000	820,000	-	556,163,040
특별회계	9,135,913	-	-	-	9,135,913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4 건	2,790,000	820,000	1,970,000
135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590,000	590,000	0
262	시설비	옐로우게이트 도색 및 전광판 개선사업비	140,000	80,000	60,000
308	사무관리비	장성군 온라인쇼핑몰이벤트 프로모션	160,000	50,000	110,000
373	시설비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900,000	100,000	1,800,000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 820,0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01	일반 예비비	0	820,000	820,000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의안 번호	제2367호
----------	--------

2023. 3. 31.(금) 11: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3. 3. 24.(본회의)
- 상정일자
.제2~4차(3.28~30.)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금안 상정.심의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담당부서장 세부설명, 질의·답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3.30.) : 기금안 의결

2. 제안설명(총무과장)

- 생략 -

3. 주요내용

- 설치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재 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 용 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사용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 군민

□ 자금수지 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000,000	-	2,000,000	합 계	2,000,000	-	2,000,000
전입금	-	-	-	비용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용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	-	-	예치금	2,000,000	-	2,000,000
예수금	-	-	-	차입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	-	-	예수금원 리금상환	-	-	-
기타수입	2,000,000	-	2,000,000	기타지출	-	-	-

4. 검토보고(전문위원)

○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의거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5. 질의 및 응답 요지 : 생략(별도 회의록 비치)

6. 심사결과 : 원안가결